

## 조세심판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성명	대리인
	상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통지 내용	담당 조세심판관(주심)	담당 조세심판관(배석)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번호			
	담당(연락처)			
	항변자료	첨부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을 때에는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	<p>가. 심판청구인은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74조, 제74조의2 등).</p> <p>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진술이나 심판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석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의견진술(컨퍼런스콜)을 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58조 등)</p> <p>다. 의견진술 신청, 심판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은 우편, 전송(FAX) 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p> <p>라. 소액인 심판청구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 등)</p>		

붙임 : 처분청의 답변서 (부분).    끝.

※ 첨부된 답변서는 처분청의 의견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처분청의 답변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즉시 청구인(또는 대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이 경우 답변서에 대한 항변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 세 심 판 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